KOSHA Guide C-46-2023

(2) 그 밖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화약류의 취급

- 4.1 발파작업 일반
- 4.1.1 작업시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
 - (1) 화약류나 발파기재의 수송, 취급, 저장 및 사용은 발파작업에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지휘·감독하여야 한다.
 - (2) 화약류나 발파기재를 작업장에 반입·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- (3) 발파기는 제조업자의 지시대로 유지,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·후에 주 기적으로 시험, 검정을 하여야 한다.
 - (4) 발파구역 입구에는 경고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 - (5) 화약이나 폭약은 절대로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6) 빈 화약류 용기 등 쓰레기는 재사용을 엄금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폐기하여야 한다.
 - (7) 동력기계(소형 브레이커, 씽커 등)는 장전공으로부터 15m 이내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(8) 18세 미만인 자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한다.
 - (9) 전기뇌관을 사용하는 발파는 전기발파기나 지정된 동력장치에 의해 점화되어야 한다.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하는 발파는 발파기나 제작회사가 규정한 점화장비에 의해 점화되어야 한다.
 - (10) 레이다, 무선송수신 시설 또는 실험결과 누설전류가 전기발파 작업에 위험을 미